

2020학년도 초등 봉사활동 운영계획

상해한국학교

1. 목표

- 1) 봉사활동의 의의를 알고, 다양한 봉사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의식을 갖춘 21세기의 바람직한 민주시민을 양성한다.
- 2) 봉사활동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기르고 삶의 보람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한다.

2. 방침

- 1) 학생 봉사 활동은 완전히 자발적인 봉사활동이 되기 어려우므로 가치 있는 교육활동이 될 수 있도록 안내·조정되는 활동이다.
- 2) 학교 계획에 의한 단체 봉사 활동은 학교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며 교사·학부모·봉사활동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한다.
- 3)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개별 봉사활동은 학생이 자율적으로 계획·실천한다.
- 4) 효율적이며 가치 있는 봉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를 하며, 충분한 정보수집과 면밀한 계획에 의해 추진한다.

3. 추진 계획

- 1) 봉사 활동 시간 운영 및 내용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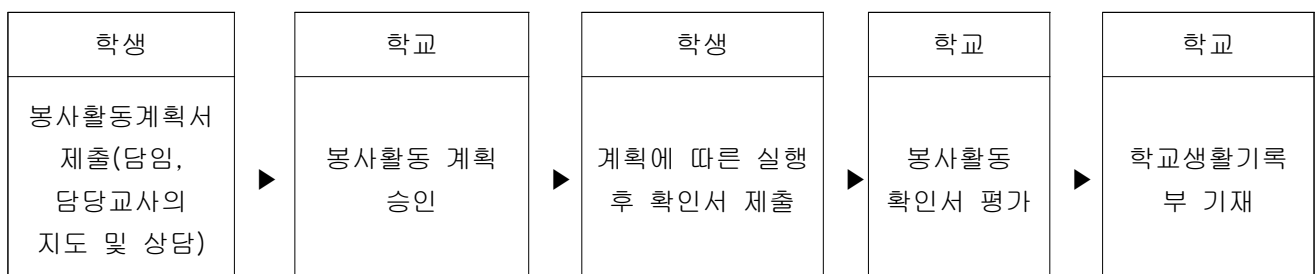
구분	평일(6교시 수업기준)	휴업일(토, 공휴일)
인정시간	2시간	8시간

가)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 학년 초 부서별로 봉사활동 계획을 제출하고 담당부서에서 봉사활동과 봉사시간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승인한다.

나)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 개인별 학생 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전 봉사활동 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하
되,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후 승인으로 인정 가능
(※ 봉사활동 계획 승인은 학교 전결규정 개정을 통해 담임 전결로 처리할 수 있음.)
- 학생 개인이 봉사활동을 계획하고자 할 때 학급담임교사나 업무담당교사의 지도와 상담활동
이 이루어지도록 함

2) 2019년 기준 상하이 주재 봉사활동 인정기관

: 중국 경로원, 한국상회, 한국문화원, 상해 희망도서관, 상해 한글학당, 한국스카우트 연
맹, Hands on Shanghai, stepping stones, 상하이 드림봉사단(해피트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 상해 주말학교, 상하이 에듀뉴스, 남중지역 아동센터, 두레 북카페, 민들레 주말학교, 상
해조선족 주말학교, 상해 아름다운 매장, 상해 한인청소년 오케스트라 등

4. 봉사활동 실적의 인정

- 1) 봉사활동 확인서는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직인으로 발급한다.
- 2) 학교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은 학교장이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3) 전입 시 이전학교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한다.
- 4) 학생의 징계 등에 의한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5) 봉사활동은 시간 단위로 입력하되, 동일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입력(합산하여 1시간이 안 되
는 경우는 버림)
- 6) 학년마무리가 끝나고 겨울방학 동안 이루어진 봉사활동은 다음 학년의 담임교사가 학교
학생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 후 학교생활기록부 담당자의 협조를
구한 후 입력한다.
- 7) **인정불가 : 영리목적의 기관(시설),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시설), 종교 단체에서 주관
한 봉사활동은 실적 인정 불가**
- 8) **봉사활동 내용별 인정 기준**
 - 봉사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전문교육 및 회의시간은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
 -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 연습시간은 인정(단, 봉사
활동 현장에서 공연시작 전에 하는 공식적 공연준비나 최종연습 등은 포함하되, 공연주체
의 일상적인 공연준비나 연습은 제외)
 -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경우, 200자 원고지 5매 당 또는 A4 1매를 1
시간 기준으로 인정 (점자, 녹음 등 번역과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 유사한 기준을 정하여
인정)
 -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주차 안내 등),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참여는 불인정(정부·지자체의 기념식 등의 공공행사에 단순 동원식 참여 및 행정기관
으로부터 활동비 등 대가를 받는 활동은 제외)
 - 물품 및 현금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없음
- 9)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음
- 10) 봉사활동 동아리에서 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

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 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학생회, 방송반, 선도부, 당번 활동 등은 자율활동 또는 동아리 활동 등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하지 않음
다만, 동아리 활동반이 별도의 봉사활동 계획을 세워 동아리활동과 별도의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에는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 11) 예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의 인정여부는 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인정

개 인 봉 사 활 동 계 획 및 확 인 서

인적 사항	학년 반	번호		성명	
활동 일시	2020 년 월 일부터 2020 년 월 일 까지 ()일간 총 () 시간				
활동 장소	기관명				활 동 영 역
	전화번호				☐ 교내봉사활동 ☐ 지역사회봉사활동 ☐ 자연환경봉사활동 ☐ 캠페인활동 ☐ 기타 ()활동
	주 소				
활동 내용					
위와 같이 봉사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2020 년 월 일 성명 (인) 위의 봉사활동 계획을 허락합니다. 담임 (인) (					
◎ 학교 봉사활동은 교육적 차원에서 시행되는 만큼 「봉사활동 자기평가 및 소감문」을 작성하도록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계획에 의거하여 총 ()시간 봉사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2020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_____ 성명 _____ (인) 확인 기관명 : _____ (직인)					
상 해 한 국 학 교 장 귀 하					